

## 당번변호사제도

당번변호사제도는 경찰이나 검찰청에서 취조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피의자나 그 가족 지인으로부터의 연락으로 대기중인 변호사가 무료로 면회를 하러 가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본전국의 각 변호사회에서 실시합니다.

### 1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

일본헌법 34 조는 용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의뢰권을 보장합니다. 용의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로 불리며 기소되면 피고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피고인에 변호사를 의뢰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라 하여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가 붙습니다.

한편 기소전의 피의자에게는 국선변호인제도가 없으므로 자비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변호인을 선정할 비용이 없거나 변호인 의뢰 방법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당번변호사제도가 있습니다.

### 2 당번변호사 의뢰

피의자 또는 피의자 가족, 친구, 지인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온 날의 당번 변호사가 통역을 데리고 면회합니다. 면회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입장과 권리, 앞으로의 전망, 형사절차 의 개요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또한 위법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첫번째의 면회는 통역료를 포함하여 무료이지만 그 이후도 변호를 의뢰한 경우에는 사선변호인으로서의 변호료가 필요합니다.

### 3 법률부조제도의 이용

변호료를 지불하는 것이 어려울 때, 일본 변호사연합회에 의한 비용의 대납제도가 있습니다.

원칙으로서 (1)무죄를 가리는 경우, (2)기소전 변호의 필요가 있다 (3)피의자가 20 세미만인 경우에 법률부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번변호사에게 신청하면 신청절차를 도와줍니다. 신청이 인정되면 일정금액의 변호사비용을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대신 납부해 줍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의처 효고현변호사회 형사변호 센터 078-341-2940

※ 주 자세한 내용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바랍니다.